

## 공서양속에 반하는 중재판결: 경제제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rbitration awards against public policy;  
in regards to economic sanctions

한수민\*\*

Han, Soomin

김진비\*\*\*

Kim, Jinbi

이재혁\*\*\*\*

Lee, Jaehyuk

### 〈목 차〉

- I. 서 언
  - II. 경제제재의 종류
  - III. 공서양속에 대한 중재 상의 판단
  - IV. 경제제재와 공서양속의 관계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국제중재판결, 공서양속, 경제제재, 중재적합성, 무역제재, 금융제재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한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에서 대학원생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주저자. soominh19@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공동저자. jimbikim00@gmail.com

\*\*\*\* 한미사이언스,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교신저자. jaelee7389@gmail.com

## I. 서 언

최근 국제 관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진영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진영화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경제제재이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 (Huawei Technologies Co, Ltd.)에 대한 제재, 2023년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Micron Technology, Inc.)에 대한 제재를 주고받으며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의 광범위한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둬들인 경제제재 속 한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영화가 가속되는 국제 양상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미국과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에 대한 편향적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라는 계속된 요구로부터 한국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 중국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해오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은 United Nations (이하 'UN') 회원국으로서 UN 제재조치를 단순히 따르고 있는 것을 넘어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제재는 한국의 국제 관계를 결정 짓는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주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사중재판정과 경제제재의 관련성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 상거래에서 중재가 신속하게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상사중재는 일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지닌다.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재는 대부분 특정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중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1)</sup> 또한, 일방 국가의 법원이 아니므로 부당하게 자국 당사자를 우대할 가능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신속성과 단순성, 기밀성이 보장된다.<sup>2)</sup>

경제제재가 광범위하게 부과될 경우 경제제재대상국과 우리 기업 간에 체결한 국제물품 매매계약 및 해당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 금융 계약

1) Richard A. Cole, "The Public Policy Except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2) (n.d.), 3.

2) *ibid.*,

등 기타 계약의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sup>3)</sup> 또한, 경제제재대상국이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경우라도 주문 상품의 원료를 해당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sup>4)</sup> 따라서 만약 경제제재 대상국과의 물품, 서비스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중재판정이 있을 경우, 경제제재와 중재판정의 집행이 충돌될 수 있다. 이는 자산이 동결된 경제제재대상국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중재판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우선시하면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게 되고, 중재판정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경우 경제제재의 실효(失效)로 이어진다. 따라서 균형 있는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제재가 공서양속(Public Policy)의 일부로서 중재판정과 충돌되는 여러 지점들 중 집행(Enforcement)부분에 집중해 이러한 균형을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중재판정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가장 빈번하게 재판에서 주장되고 연구되는 사유는 중재의 절차적 하자이다<sup>5)</sup>. 따라서 여전히 중재판정 집행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은 모호하고 국가마다 상이한 개념에 그친다. 또, 공서양속을 근거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러시아 등 타국의 판결들을 정리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sup>6)</sup>, 대부분 집행당국의 법원이 공서양속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를 중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서양속에 대한 해석에 따른 집행불허와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서양속에 반하는 중재판정으로 부패(corruption)와 관련된 중재판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sup>7)</sup> 정치, 외교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제재와 충돌하는 중재판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제제재에 반하여 그 집행이 공서양속과 충돌되는 중재판정의 집행 여부와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다투어 투명성과 예측성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현존하는 한국의 법 체제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3) 김규진,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로서의 경제제재 -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2. 3.), 254.

4) *ibid.*,

5) 육영춘(Ying-Chun Lu);하충룡(Choong-Lyong Ha);한나희(Na-Hee Ha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2020, 5.), 85.

6) Liliia Andreevskikh(Liliia Andreevskikh );박은옥(Eun-ok Park). “Public Policy Exception under Russian Law as a Ground for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중재연구 제32권 제3호 (2022. 9.), 54.

7) Samantha Nataf. “The French approach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corruption.” 중재연구 제33권 제3호 (2023, 9.), 32.

## II . 경제제재의 종류

### 1. 경제제재의 의의

경제제재 (Sanctions)는 제재대상의 정책 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교, 정책적 수단으로서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현 국제사회는 대량과괴무기 확산, 인권침해, 테러지원, 무력충돌 등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활동의 억제를 위해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경제제재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집행된다.

### 2. 경제제재의 종류

#### (1) 유형별 분류

제재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무역제재 (Trade Sanctions), 금융제재 (Financial Sanctions), 여행금지 (Travel Bans), 항공 및 해운제재 (Aviation ban & Maritime Sanctions), 총 4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재의 유형 중 직접적으로 ‘경제’ 제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무역제재,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제재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전면적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전면 금수조치, 특정품목에 한정되는 특정품목 수출 또는 수입 금지, 차별적 관세 부과 등이 존재한다. 한편, 금융제재의 경우, 제재대상자에 대한 자산동결이 가장 대표적 형태이고, 공공/ 상업 차관 금지, 공적개발원조 금지, 합작투자/협력사업 금지 등의 유형도 존재한다. 한국에서 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 금융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더불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과괴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 (2) 부과 주체에 따른 분류

제재를 부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자간 제재 (Multilateral Sanctions)와 일방적 제재 (Unilateral Sanctions)로 나눌 수 있다. UN 회원국이나 EU 회원국들에 의해 집단적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다자간 제재에 속하고, 특정 국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일방적 제

8) 전략물자관리원, “제제란?”, KOSTI 국가별 제제현황. (2023. 7. 25. 확인).

제에 속한다. 통상 일방적 제재는 시행한 국가의 영토나 국민의 행위에 한해 적용되지만, 2차 제재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방적 제재의 경우 해당국의 제재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sup>9)</sup> 본 논문은 여러 다자간 제재와 일방적 제재 중 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재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UN의 제재와 더불어, 2차 제재적 요소를 포함하여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UN에 의해 부과되는 다자간 제재의 경우, 유엔헌장을 근거로 작동한다. UN은 유엔헌장 규정 7장 41조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회원국에게 병력의 사용 (the use of armed force)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로서 작동하며, 대상국의 일반 국민 전반에 적용되는 전면적 제재 (Comprehensive Sanctions)와 더불어 표적대상 제재 (Targeted Sanctions)를 병과하고 있다.<sup>10)</sup> 우선, 전면적 제재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북한, 예멘, 이라크, 시리아, 아이티 다수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1개의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갱신하였고, 아이티에 대한 경제제재가 추가되었다.<sup>11)</sup> 반면, 표적대상 제재는 전면적 제재가 대상국의 일반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피해를 초래하고 해당 정부의 대국민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등장했다.<sup>12)</sup> 이러한 표적대상 제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한정에서 경제제재가 적용된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반군 등 제재대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전면적 제재대상 중 우리나라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북한에 관한 제재는 2006년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제재는 무기금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규제, 사치품에 대한 수출 규제, 자산동결, 여행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특정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일방적 제재의 경우, 각 국가의 법률 및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한다. 오늘날 경제제재를 가장 자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와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을 포함한 다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 안보, 대외정책 등의 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특정국 전체에 대한 포괄

9) 전략물자관리원, “제제안내 범위”, KOSTI 국가별 제재현황. (2023. 7. 23. 확인).

10) 외교부 유엔과, “안보리 제재 (sanction)”,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 (2007. 11. 5).

11) “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for 2022”, United Nations, UN 문서 A/77/2, 2022 Supp. No. 2, 10.

12) 주10) 외교부 유엔과.

13) 전략물자관리원, “국제제재 개요”, KOSTI 국가별 제재현황. (2023. 7. 23. 확인).

적 제재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개인, 단체 등에 한정하는 표적대상 제재의 형태로서 더 많이 이뤄진다.

### III. 공서양속에 대한 중재 상의 판단

#### 1. 공서양속의 의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는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도입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판정의 집행은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sup>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제34조 또한 동일하게 공서양속을 근거로 한 중재판정의 집행 거절을 규정하고 있다.<sup>15)</sup> 공서양속은 특히 중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하는 이 외의 집행장애사유와 구분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공서양속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기에 협약 회원국이 해당 용어를 개별적으로 정의할 자유를 가진다.<sup>16)</sup> 또한 집행 단계의 경우, 공서양속의 판단 기준은 특정 중재판정의 집행국에서의 의미를 따라야 할 것이다.<sup>17)</sup>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약 회원국들은 공서양속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하다.<sup>18)</sup>

‘공서양속’은 공법과 구분되는 국가의 상당한 공공가치 등이 파생되는 공공질서이다.<sup>19)</sup> 국제 법 학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에 따르면, 국제 공서양속 (International Public Policy)은 (1)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의, 도덕과 관련된 기본원칙; (2) 국가의 본질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도록 설계된 규칙으로 일명 ‘lois depolice’; (3)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대한 특정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해당된다.<sup>20)</sup>

14)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6) Reinmar Wolff,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0 June 1958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2nd ed.), München: Beck, Hart and Nomos (2012), 494.

17) Richard(주 1), 위의 글, 3.

18) JusMundi, “New York Convention: Public Policy Exception”, Jansen Denise, <https://jusmundi.com/en/document/publication/en-new-york-convention-public-policy-exception> (2003. 5. 16.).

19) KOTELNIKOV, “Economic sanctions,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20), 23. [KOTELNIKOV]

20) Petra Butler, “Kastom: A Public Policy Excep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dian Journal of Arbitration Law Vol 7(1) (2018), 110, 111.

## 2. 공서양속 관련 갈등의 중재적합성

사인 간의 상거래 계약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서 중재인들은 사인에 불과하기에 공법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sup>21)</sup> 또한, 중재인은 특정 국가의 법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즉, 공법과 관련된 문제는 오직 국가 또는 국제 ‘법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법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공서양속과 관련된 문제 또한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국내 법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상거래에서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가 공법 또는 공서양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한다.<sup>22)</sup> 특히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함으로써 국내 법원과 다른 공법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중재판정을 중국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따라서 공법 혹은 공서양속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 간 분쟁의 중재적합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판례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주 법원은 쿠바 자산에 대한 경제제재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한 바 있다.<sup>23)</sup> 캐나다 퀘벡 주 법원 또한 *Air France v. Libyan Airlines* 에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가 갈등의 중재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24)</sup> 따라서 중재합의의 의도가 의무 법률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sup>25)</sup> 사인 간의 상거래 계약상 갈등의 중재 적합성은 경제제재와 같은 공서양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공서양속과 중재판정 집행의 중요성

경제제재와 같은 공서양속과 관련된 사인 간의 상거래 계약상 갈등이 중재의 대상이 될 경우 본안 판단의 기준은 준거법이므로 집행지가 아닌 준거법 당국의 경제제재 등이 공서양속의 기반이 된다. 그 결과 준거법과 집행지의 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이 집행지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제재로 인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경제제재 부과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sup>26)</sup> 하지만 중재판정은 관련 국가 당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국가 당국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21) 주19) KOTELNIKOV, 15.

22) 주19) KOTELNIKOV, 17.

23) *ibid.*,

24) *Air France v. Libyan Airlines*, Cour d’appel du Québec, [2003] FC 35834.

25) 주19) KOTELNIKOV, 20.

26) 주19) KOTELNIKOV, 18.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만약 경제제재의 부과가 적법, 정당한 경우 그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재판정이 경제제재 상 금지되는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이 경제제재 대상자에 대한 채권 지급을 명하거나 경제제재로 인하여 동결된 자산에 대한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법원이 그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sup>27)</sup>

즉,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sup>28)</sup>

집행이 중재판정의 최종 단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서양속을 근거로 한 집행의 거절이 국가의 공서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집행단계에서 경제제재에 반하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검토한다.

## IV. 경제제재와 공서양속의 관계

### 1. 무역제재와 공서양속

무역제재는 통상 전면적 금수 조치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수출금지의 형태로 이뤄진다. 본래 경제제재 조치는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인데, 이러한 경제제재의

2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28) *ibid.*,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 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sup>29)</sup> 수출,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무역제재를 통해서 사인 간의 국제거래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중재판정이 무역제재 상 금지되고 있는 수출, 수입 등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경우, 집행 당국이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근거하여 해당 중재판정이 무역제재의 내용에 반함을 이유로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해당 중재판정에 법적 취급은 무역제재를 가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역제재 부과 대상이 UN인 경우, 국내제재인 경우, 미국 등의 타국 주도로 이뤄지는 제재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UN 등 집단적 제재의 경우

ILA는 공서양속 위반 판단 기준이 되는 국제적 의무 목적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포함하지 않지만, 유엔 경제제재는 포함된다고 보았다<sup>30)</sup>. 본 논문 또한 공서양속의 해석과 관련하여 UN의 제재는 공서양속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법상으로 공서양속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조항과 관련 있다. 특정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제103조와 공서양속의 해석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질서 내지 그 원칙이고, 공서양속의 목적은 법질서의 자기존중 및 자기모순의 방지라는 주장, 헌법질서를 사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sup>31)</sup> 또한, 공서양속 주장이 실정법 질서에 속하지 않는 도덕규범을 법질서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sup>32)</sup> 공서양속의 개념에 대한 광의적 혹은 협의적 의미의 법률해석을 채택하든 공통적인 내용은 해당 규정이 법질서의 자기존중 및 자기모순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공서양속이 해당 법규 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무역제재와 공서양속의 관계를 해석해 볼 수 있다. UN 제재의 목적은 통상 정의롭다고 간주되는 관념과 결부된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함유될 때도 다수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질서를 어지럽힌 국가들에 대해서 가해진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

29) 김규진, “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9.), 2.

30) 주19) KOTELNIKOV, 24.

31) 윤진수,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 (General Report)”, 민사법학 제85호 (2018. 12.), 431, 433.

32) 윤진수(주 28), 위의 글, 388, 389.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제재는 대부분 테러 억제, 인권 보호, 핵무기 비확산 촉진 등을 명목으로 행해진다.<sup>33)</sup>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규는 국내법에서 법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상 가치를 기본적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적 체계상으로도 국제법상 원론적인 가치들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원론적인 가치들에 부합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UN의 경제제재 조치들은 공서양속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 (2) 국내제재

한국은 UN 회원국으로서 UN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G7 등 다른 국가들의 제재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국내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제한된 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재 조치도 취하였다. 2023년, 한국 정부는 수출 제재 품목을 74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기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up>34)</sup> 이렇게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같은 UN 제재 이외의 국내제재가 공서양속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보자면, EU의 경우 EU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공서양속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본다.<sup>35)</sup> 예를 들어 Eco Swiss 사안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EU의 의무 법률 (Mandatory Law)의 위반은 공서양속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러시아 재판부 또한 경제제재가 공서양속의 일부를 구성함을 일관된 판결을 통해 확인하였다.<sup>36)</sup> 예를 들어, 2019년 북한 개인에 의해 제기된 소의 집행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연관시켜 거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중재판정에 집행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중재판정이 Presidential

3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 (2023. 7. 21. 확인).

34)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수출금지 품목 확대, 5만달러 넘는 자동차, 기계 포함”,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42E9BCAD24A5A6EEE09A10BE566B510.Hyper?pageIndex=1&Index=73396&sSiteid=1](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42E9BCAD24A5A6EEE09A10BE566B510.Hyper?pageIndex=1&Index=73396&sSiteid=1) (2023. 7. 20. 확인).

35) 주19) KOTELNIKOV, 24.

36) 주19) KOTELNIKOV, 25.

Decree of 22 October 2018 No. 592 ‘On Special Economic Measur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Unfriendly Actions towards Citizens and Legal Ent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명시된 제재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이었다.<sup>37)</sup>

미국 재판부는 *Parsons & Whittemore Overseas Co. v. Société Générale de l’Industrie du Papier* 에서 공서양속이 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국가의 외교 정책을 이유로 중재판정 집행이 거부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38)</sup> 하지만 *Ministry of Defens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v. Gould. Inc* 에서는, 미국인 계약당사자가 계약 물품을 이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한 중재판정이 *US Munitions List* 에 배치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을 거부했다.<sup>39)</sup>

특정 중재판정이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경우, 중재판정의 효과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sup>40)</sup> 공서양속을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중재판정의 실효성이 사라져 무효화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판정 실효성과 경제제재 효과성 추구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국내제재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UN 등 범국가적 국제기구에 의해서 가해지는 국제제재와 달리 국내제재는 그 목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국의 이해관계에 어긋날 경우 국내적 절차만을 거쳐 부과될 수 있기에 달리 취급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모든 국내제재를 공서양속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제재만 공서양속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제재의 국제법상 취급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즉, 국내제재의 경우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공서양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국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정당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국가책임초안 제3부 제2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해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복과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권리이다.

국가책임법적 관점에서 보면,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항하여 일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제재 조치는 그것이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무력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sup>41)</sup> 따라서 일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제재 조치는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합법적인 행위로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37) *ibid.*,

38) *Parsons&Whittemore Overseas Co v. Societe General de l’industrie du Papier (RAKTA)*, 508 F2d 969, 977(2d Cir 1974).

39) Eric De Brabandere and David Holloway, *Research Handbook o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Leiden: Grotius Centre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2016), 12.

40) Richard(주 1), 위의 글, 3.

41) 이동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통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합의 - 제3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2022. 3. 31.), 43, 44.

수 있다.<sup>42)</sup>

만약 한국의 국내제재가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UN 등에서 취해지는 집단적 제재와 마찬가지로 공서양속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책임법 제3부 제2장에 따르면 수단의 비무력성, 대상의 유책국 한정성, 시간의 일시성 및 의무의 가역성, 조치 수준의 비례성,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한계 준수 등이 대응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데, 이러한 대응조치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sup>43)</sup>

결론적으로 해당 국내제재의 목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대응조치로 평가될 경우 공서양속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 해당 국내제재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3) 특정국가의 제재 중 미국의 제재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경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써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부과해온 국가로 평가된다.<sup>44)</sup> 미국과 국제 정치에서 대적점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 중 무역제재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수출통제개혁법 및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sup>45)</sup> BIS는 미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외국 기업 등을 수출통제제재리스트에 등재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미국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한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란에 관련된 것이다. 2015년, 이란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및 중국 간 이란핵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에 대한 행정명령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을 통해 JCPOA 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가 한국의 중재판정 집행을 다루는 데 있어 유의미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미국의 제재는 곧 G7 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재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42) *ibid.*,

43) *ibid.*,

44) Vera Gowlland-Debbas,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2004), 605.

45) 김지이나 외 공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7091> (2022. 3. 11.).

제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최근 미국은 G7 등의 국가뿐 아니라 군사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즉 2차 제재 때문이다. 2차 제재는 제재조치국과 제재대상자 간의 직접적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와 달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 등이 자국이 설정한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는 경우 이들 제3자를 상대로 가하는 제재이다.<sup>46)</sup>

가장 직접적인 2차 제재 수단은 후술할 금융제재와 관련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이다. 이외에도 무역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관할권 등의 확대를 통해서 2차 제재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국내법에서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외국 기업도 제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속인적 관할법의 확대 방식이나 또는 전체 물품 가치에서 미국산이 최소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관할권 확대 방식 등을 활용한다.<sup>47)</sup> 또한, EAR 내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기초하여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산 물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sup>48)</sup> 2차 제재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수출입 은행 지원 금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불가, 미국 조달시장에서의 배제 등 여러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이러한 2차 제재의 국제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안보 예외 적용상의 한계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제재대상과의 거래로 제3자인 자신도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를 존속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제3자의 국적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대해 위협을 구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는 UN 등 범국가적 주체일 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규제 당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재도 공서양속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국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정당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되나,<sup>50)</sup> 이러한 조치가 UN 등에 의해 가해지는 경제제재와 마찬가지로 집행국의 공서양속과 관련된 법리로써 취급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6) 이동은,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2020), 196.

47) *ibid.*,

48) 김규진, “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9.), 68.

49) 이동은(주 46), 위의 글, 200, 202.

50) *ibid.*,

2차 제재가 국내법의 역외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듯이,<sup>51)</sup> 이러한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경제제재를 한국의 공서양속으로 포섭할 경우 또한 유사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규제 상으로는 분명히 허용되는 거래와 중재판정임에도 이를 타국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국내에 대한 타국의 내정간섭 또는 주권 침해로 귀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국이 타국에게 특정 행동과 경향성을 취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의해 국제법상 금지되기에 한국에서 중재판정 집행시 타국의 경제제재는 공서양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은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실제로, *Sofregaz v. NGSC* 에서 프랑스 법원은 UN과 EU의 국제제재를 공서양속의 개념에 통합시킬 수 있지만 미국 당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제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53)</sup> 이러한 프랑스 법원의 선례에 따라 유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2. 금융제재와 공서양속

중재법 제35조에서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중재 당사자는 중재 상대방의 자산 등이 위치한 집행지 법원에 적법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에 의하여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교 및 영사 목적의 재산, 군사 재산, 중앙은행 계좌 이외에 집행지에 위치하는 자국, 타국, 타국 기업의 재산 모두 집행의 대상이 된다.<sup>54)</sup>

금융제재의 가장 대표적 형태인 자산동결은 중재판정 집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자산동결은 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제재대상자에게 속하지만 그 소유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제재이다.<sup>55)</sup>

집행지에 위치한 제재대상자의 자산이 동결된 상태라면 해당 동결자산을 집행대상으로 보는 것은 경제제재, 즉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산동결과 관련된 경제제재는 앞서 언급된 무역제재와 달리 취급되기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제재에 반하는 집행청구에 대한 거절은 이미 현존하는 경제제재라는 정부

51) *ibid.*,

52) 이동은(주 41), 위의 글, 41.

53) Beibei Zhang, Wei Shen, “Whe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eets China’s sanction laws: livign together but remaining apart?”,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022), 12.

54) JusMundi, “Sovereign Immunity from Execution (in Enforcement)”, Ugale Anastasiya, <https://jusmundi.com/en/document/publication/en-sovereign-immunity-from-execution-in-enforcement> (2023. 7. 29. 8:00 확인).

55) 전략물자관리원,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2021), 7, 8.

의 실질적 공권력 행사의 일부에 불과한 반면, 경제제재로 인해 동결된 자산에 대한 집행은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철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에 반하는 동결자산의 해제는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제재 적용으로 인하여 이미 형성된 신뢰의 배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제재대상자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일괄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경제제재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적법절차를 거친 중재판정의 집행청구를 그 상대방의 자산이 경제제재의 일환으로서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한다면 결과적으로 중재판정 집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본질에 따른 공서양속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중재판정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집행청구권자가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하여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한국에 동결되어 있고<sup>56)</sup>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유로클리어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약 280조 원에 달한다.<sup>57)</sup> 하지만 한국 규제 당국은 중재판정의 집행청구권자가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구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금융제재는 군사적 대응을 지양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한 평화로운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향후 점차 더 선호되는 수단이다. 또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중재절차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며 중재합의조항을 사인 간 계약 시 추가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제재와 중재판정이 더욱 빈번해질 미래에는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 미국의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 사례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와 그 일환인 자산동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락한 경우가 있다. 캐나다 광산회사 크리스탈렉스 (Cystallex)가 베네수엘라의 금광 국유화에 대한 보상으로 2016년 세계은행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nternational Centre of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가 판정한 14억 달러 중 미상환금 9억 7천만 달러에 대한 집행을 미국 델라웨어에서 구한 바 있다.<sup>58)</sup> 이에 대하여 델라웨어 주 법원은 재무부의 베네수엘라와 그 국영 석유회사 PDSVSA의 자산동결에도 불구하고 PDSVSA 소유의 미국 자회사인 CITGO 주식 경매 절차를 개시하

56) SBS, “美, 이라크 내 이란 자산 동결 푼다…국내 묶인 70억달러는?”, 네이버뉴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1935> (2023. 7. 29. 확인).

57) 한국일보, “러시아 ‘동결자산’에 붙은 이자만 1조 원...”우크라 지원“ EU의 큰 그림?”, 네이버뉴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4210003560> (2023. 7. 29. 확인).

58) Venezuelanalysis, “Venezuela: CITGO Breakup Looms with Protection End in Sight”, <https://venezuelanalysis.com/news/15687> (2023. 7. 29. 확인).

었다.<sup>59)</sup>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은 ‘특별 마스터’ (Special Master)를 임명하여 재무부로부터 동결된 자산의 압류를 허락하는 면허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재무부 산하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예외로서 면허 (license)를 발급하여 특수한 경우 동결자산에 대한 압류, 집행이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위 크리스탈렉스 사안의 경우 OFAC는 일반 면허 (general license) 외에도 추가적인 면허를 요구하였다.<sup>60)</sup>

유사한 사안에서 코노코필립스 (Conoco Philips)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국제상업회 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판정과 ICSID의 중재판정을 베네수엘라 기업 PdV의 재산을 상대로 집행하기 위해 OFAC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sup>61)</sup>

## (2) EU의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 사례

EU 또한 비록 적법절차를 통한 중재판정은 집행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경제제재대상자인 경우 집행국에 위치한 자산이 모두 동결되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 재산이 부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집행국 법원이 자의적으로 자산동결을 해제하여 집행을 허가할 권한이 없고, 규제당국으로부터 집행을 위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62)</sup>

CJEU는 Bank Sepah v. Overseas Financial Limited and Oaktree Finance Limited 에서 판정의 집행을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결정 전에 국가 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 경제제재 집행 당국의 허락 또는 면허의 필요성을 다시금 명시했다.<sup>63)</sup> 다만 CJEU는 규제당국에게 동결자금 해제 여부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sup>64)</sup>

예를 들어 튀니지 기업 시바플라스트 (Siba Plast)는 프랑스에서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 (Libyan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의 재산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한 바 있는데, 프랑스 법원은 예외적으로 프랑스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동결된 리비아 자산에 대한 집행을 허가했다.<sup>65)</sup>

59) *ibid.*,

60)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FAQs - Venezuela Sanctions”, <https://ofac.treasury.gov/faqs/1123> (2023. 7. 29. 확인).

61) Argus, “Conoco Philips steps up global push to collect PdV debt”, <https://www.argusmedia.com/en/news/2256628-conocophilips-steps-up-global-push-to-collect-pdv-debt> (2023. 7. 29. 확인).

62) Hamish Lal, Brendan Casey, “Eu, Uk & Us ‘Sanctions’: Procedural and Substantive Impac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 Resol. Int’l* 109, 119 - 20 (2022).

63) *ibid.*,

64) Ahan Gadkari, “EU Interference in Arbitration: Special Emphasis On the Effect of Unilaterla Sanctions”, *J. 3 Int’l Law & Com*, 61, 68 (2022).

65) Teynier Pic,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States under Sanctions: a new challenge”, <https://www.teynier.fr/en/enforcement-of-arbitral-awards-against-states-under-sanctions-a-new-challenge/> (2023. 7. 29. 확인).



### 3. 한국에서의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 제도의 검토

#### (1)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제도

한국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또는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로서 정권, 개인 등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을 위해 집행청구권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 및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중재판정을 동결자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 OFAC의 면허 제도는 크게 두 개의 면허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면허의 경우, 경제제재대상이 미국 관할권 내에서 법률 상담이나 변호가 필요한 경우 기타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한다.<sup>66)</sup> 이외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금지되는 재산권의 이전, 변경 등의 조치는 이를 요구하는 법령 또는 기타 명령이 존재하더라도 OFAC로부터 별도의 면허 발급이 필요한 것이다.<sup>67)</sup>

즉, 적법절차를 거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OFAC로부터의 별도의 면허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OFAC는 단순히 중재판정이 적법절차를 밟았는지 판단하여 집행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재의 배경과 집행허가로 인한 정치적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 집행청구권자는 적법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을 구한 이후에도 별도로 집행국의 정치적 고려를 거쳐야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복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제재의 배경이 되는 특수한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허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결정결과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 사회질서를 옹호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존중하지 않고 제재대상자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OFAC는 집행청구자가 직접적인 제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 실질적으로 제재의 대상자가 되거나 그 자산이 다시 제재대상자에게 유출될 여부가 있는지 심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와 심사 단계를 거쳐 집행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sup>68)</sup> 즉, 제재대상자의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결정 외에 관련 정부부처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요한다. 비록 한국의 경우 해외자산담당 부서가 별도로 존

66) Michael P. Malloy, "Economic Sanctions and Retention of Counsel", 9 Admin. L.J. Am. U. 515, 542 - 44 (1995).

67) *ibid.*,

68)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gencies Assess Impacts on Targets, and Studies Suggest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Sanctions' Effectivenes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10.), 23.

재하지 않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집행청구권자가 현재 경제제재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와 같은 정부부처의 집행허가결정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69)</sup>

## (2) 한국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제도

다만 정부부처의 집행허가결정은 절차적 요건만 검토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허가결정은 행정청이 정치적, 외교적 요인을 검토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정부부처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고, 중재당사자의 한국의 집행절차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로, 이미 경제제재로 인하여 동결된 자산에 대한 예외적인 집행을 허가하는 행정행위는 현존하는 행정행위 (경제제재)에 대해 그 효력을 폐지하는 철회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권리불행사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철회의 공익상의 필요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형량하여 행정행위의 철회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70)</sup> 따라서 행정청은 자산동결로 인한 경제제재의 효과와 그 중요성을 중재판정 존중 의무 및 중재당사자의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와 비교형량하여 행정행위의 철회를 결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가 없다면 위 집행허가결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제재에 반하는 제재대상자의 집행청구에 대한 법원의 집행거절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성의 보장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부부처의 집행허가결정은 행정행위이므로 재심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예외적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의 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71)</sup> 즉, 자산집행 거부결정이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을 청구한 중재당사자에게 법규, 조리 상의 신청권이 필요한 것이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69)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3. 7. 14.), 2.

7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7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집행청구권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행정청에게 그 집행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결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집행불허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이 경제제재의 정치적, 외교적 필요성과 적법 유효한 중재판정의 집행 필요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형량 했는지를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집행허가결정제도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중재 당사자의 신뢰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적법한 중재판정의 집행이 경제제재와 상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경제제재 관련 행정청에 맡길 경우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제제재와 그 공서양속에 치우친 결정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균형을 찾기 위하여 행정청의 집행불허결정에 대하여 중재 일방 당사자가 항고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항고소송 등이 이뤄진다면 여전히 모호한 공서양속의 개념 및 그 범위와 그 상대적 지위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서양속에 대한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당사자의 더 깊은 이해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 집행의 안정성과 집행허가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발전시켜 중재 선택을 더욱 격려하는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 V. 결론

정의, 안보, 평화 등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제재는 무역제재 및 금융제재 등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회질서를 의미하는 공서양속에 포함된다. 다만 법치주의에 따라 확정판결의 법적지위를 가지는 적법한 중재판정과 그 집행보다 공서양속이 언제나 우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향후 더욱 각광 받을 상사중재판정과 경제제재가 충돌하는 경우 균형을 찾기 위해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 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근거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경제제재와 관련해 검토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무역제재와 중재판정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첫 번째로, UN과 같은 범국가적 단체에 의해 부과된 경제제재는 공서양속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법이 국제법규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UN의 경제제재는 공서양속이 규정하고자 하는 원

론적인 가치들에 부합한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국내제재의 경우 모든 경우 공서양속의 일부로써 인정되는 것이 아닌 국제법 원칙상 대응조치로 인정되는 등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제재는 국제제재와 달리 특정 국가가 자의적 절차를 통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 제재의 경우 국내문제 불간섭원칙과 관련해 집행국의 공서양속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특정 국가 제재 중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제재와 중재판정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중재판정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이 경제제재와 상충하는 경우 공서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의 집행판결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집행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부처의 동결자산에 대한 집행허가는 이미 부과한 경제제재의 철회를 의미하므로 경제제재와 경제제재가 보호하는 공서양속을 중재판정 집행의 중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집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 당사자의 집행불허결정에 대한 항고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경제제재가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중재판정과 충돌되는 여러 지점 중 집행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실 경제제재가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중재 절차와 대립할 수 있는 지점들은 여럿 존재한다. 청구인의 청구 내용이 경제제재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중재 적합성 및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그러한 내용을 인용하는 중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불어, 집행 단계 이후에 취소 소송으로 사안을 다루게 될 경우,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경제제재에 반한다는 것이 취소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러 지점 중 집행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자 한계점이며, 향후 충돌되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김규진, “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9.)
- 김규진,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로서의 경제제재 -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2. 3.)
- 김지이나 외 공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7091> (2022. 3. 11.)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 이동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통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합의 - 제3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2022. 3. 31.)
- 이동은,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2020. 5.)
- 윤진수,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 (General Report)”, 민사법학 제85호 (2018. 12.)
-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3. 7. 14.)
- 외교부 유엔과, “안보리 제재 (sanction)”,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 (2007. 11. 5.)
- 육영춘(Ying-Chun Lu); 하충룡(Choong-Lyong Ha); 한나희(Na-Hee Ha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중재연구 30, 2호 (2020): 69-90, 10.16998/jas.2020.30.2.69.
- 전략물자관리원, “국제제재 개요”, KOSTI 국가별 제재현황, <https://sanction.kosti.or.kr/user/nd7419.do> (2023. 7. 23. 확인)
- 전략물자관리원, “제제란?”, KOSTI 국가별 제재현황, <https://sanction.kosti.or.kr/user/nd7419.do> (2023. 7. 25. 확인)
- 전략물자관리원, “제제안내 범위”, KOSTI 국가별 제재현황,

- <https://sanction.kosti.or.kr/user/nd7419.do> (2023. 7. 23. 확인)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수출금지 품목 확대, 5만달러 넘는 자동차, 기계 포함”,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42E9BCAD24A5A6EEE09A10BE566B510.Hyper?pageIndex=1&nIndex=73396&sSiteid=1](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42E9BCAD24A5A6EEE09A10BE566B510.Hyper?pageIndex=1&nIndex=73396&sSiteid=1) (2023. 7. 20. 확인)  
한국일보, “러시아 ‘동결자산’에 붙은 이자만 1조 원...”우크라 지원“ EU의 큰 그림?”, 네이버뉴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4210003560> (2023. 7. 29. 확인)  
SBS, “美, 이라크 내 이란 자산 동결 푼다…국내 묶인 70억달러는?”, 네이버뉴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1935> (2023. 7. 29. 확인)  
Ahan Gadkari, “EU Interference in Arbitration: Special Emphasis On the Effect of Unilateral Sanctions”, *J. 3 Int’l Law & Com*, 61, 68 (2022)  
Air France v. Libyan Airlines, Cour d’appel du Québec, [2003] FC 35834  
Argus, “ConocoPhillips steps up global push to collect PdV debt”,  
<https://www.argusmedia.com/en/news/>  
Beibei Zhang, Wei Shen, “Whe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eets China’s sanction laws: livign together but remaining apart?”,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022)  
Eric De Brabandere and David Holloway,  
*Research Handbook o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Leiden: Grotius Centre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2016)  
Hamish Lal, Brendan Casey, “Eu, Uk & Us ‘Sanctions’: Procedural and Substantive Impac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 Resol. Int’l* 109, 119 - 20 (2022)  
JusMundi, “New York Convention: Public Policy Exception”, Jansen Denise,  
<https://jusmundi.com/en/document/publication/en-new-york-convention-public-policy-exception> (2003. 5. 16.)  
JusMundi, “Sovereign Immunity from Execution (in Enforcement)”, Ugale Anastasiya,  
<https://jusmundi.com/en/document/publication/en-sovereign-immunity-from-execution-in-enforcement> (2023. 7. 29. 확인)  
KOTELNIKOV, “Economic sanctions,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20)  
Liliia Andreevskikh (Liliia Andreevskikh); 박은옥 (Eun-ok Park). “Public Policy Exception under Russian Law as a Ground for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 Arbitral Awards.” 중재연구 32권 제3호 (2022): 47-70, 10.16998/jas.2022.32.3.47.
- Michael P. Malloy, “Economic Sanctions and Retention of Counsel”, 9 Admin. L.J. Am. U. 515, 542 - 44 (1995)
-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FAQs - Venezuela Sanctions”, <https://ofac.treasury.gov/faqs/1123> (2023. 7. 29. 8:00)
- Parsons&Whittemore Overseas Co v. Societe General de l’industrie du Papier (RAKTA), 508 F2d 969, 977 (2d Cir 1974)
- Petra Butler, “Kastom: A Public Policy Expec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dian Journal of Arbitration Law Vol 7(1) (2018)
- Reinmar Wolff,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ibtral Awards of 10 June 1958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2nd ed.), München: Beck, Hart and Nomos (2012)
- “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for 2022”, United Nations, UN 문서 A/77/2, 2022 Supp. No. 2.
- Richard A. Cole, “The Public Policy Except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2) (n.d.)
- Samantha Nataf. “The French approach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corruption.” 중재연구 제33권 제3호 (2023, 9): 31-68, 10.16998/jas.2023.33.3.31.
- Teynier Pic,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States under Sanctions: a new challenge”, <https://www.teynier.fr/en/enforcement-of-arbitral-awards-against-states-under-sanctions-a-new-challenge/> (2023. 7. 29. 확인)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 (2023. 7. 21. 확인)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gencies Assess Impacts on Targets, and Studies Suggest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Sanctions’ Effectivenes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10.)
- Venezuelanalysis, “Venezuela: CITGO Breakup Looms with Protection End in Sight”, <https://venezuelanalysis.com/news/15687> (2023. 7. 29. 확인)
- Vera Gowlland-Debbas,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2004)

## ABSTRACT

### Arbitration awards against public policy; in regards to economic sanctions

Han, Soomin

Kim, Jinbi

Lee, Jaehyuk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f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Key Words** : international arbitration, public policy, economic sancti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alanced approach